

1.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1-1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단위: 천원, %)

지방세(A)	세외수입(B)	자체수입 (C=A+B)	전체세입예산액 (D)	재정자립도 (C/D×100)
27,429,000	15,429,124	42,858,124	594,707,994	7.21

1-1-2. 재정자주도

(단위: 천원, %)

지방세(A)	세외수입(B)	지방교부세 (C)	조정교부금등 (D)	전체세입 예산액(E)	재정자주도 ((A+B+C+D)/E×100)
27,429,000	15,429,124	304,197,877	12,987,000	594,707,994	60.54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단위: 천원, %)

사회복지분야 예산액(A)	전체예산액(B)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A/B×100)
146,475,355	594,707,994	24.63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

(단위: 천원, %)

자체사업예산액 (A)	자체사업비율 (A/C×100)	보조사업예산액 (B)	보조사업비율 (B/C×100)	전체예산액 (C)
123,657,510	20.79	371,198,387	62.42	594,707,994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단위: 천원, %)

행정운영경비 예산액(A)	전체예산액(B)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A/B×100)
90,644,934	594,707,994	15.24

1-1-6. 예비비 확보율

(단위: 천원, %)

예비비분야 예산액(A)	전체예산액(B)	예비비 확보율 (A/B×100)
3,000,000	594,707,994	0.50

1-1-7.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단위: 천원, %)

지방세 (A)	세외수입 (B)	자체수입 (C=A+B)	인건비 (D)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D/C×100)
27,429,000	15,429,124	42,858,124	71,907,348	167.78

1-2. 통합부채: [별첨 1]

1-3. 우발부채: 해당없음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비율(일반+특별)

(단위: 천원, %)

일반·특별회계 규모		의무지출		재량지출	
금액(a)	비율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621,471,188	100	367,433,495	59.12	254,037,693	40.88

○ 의무지출

(단위: 천원)

합 계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367,433,495	1,016,200	366,397,295	20,000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해당없음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해당없음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일반현황

기본현황		세입	총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
인구(명)	47,597	규모(억원)	8,521	265	254	3,829	167	2,564	-	1,441
		비율(%)	100	3.11	2.98	44.94	1.96	30.10	-	16.92
면적(k㎡)	396.76	세출	총계	일반 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 해양수산	수송및 교통	국토및 지역개발	기타
		규모(억원)	6,816	1,002	426	1,249	1,988	172	435	1,544
재정력지수	0.170	비율(%)	100	14.70	6.26	18.32	29.17	2.52	6.38	22.65

(단위: %)

분야		지표명	FY2020	FY2021	FY2022	FY2023	지표성격
건전성	수지관리	1. 통합재정수지비율	△3.24	1.60	15.89	△2.42	상향(↑)
		2. 경상수지비율	116.44	96.37	81.19	108.67	하향(↓)
	채무관리	3. 관리채무비율	1.38	1.29	0.97	0.90	하향(↓)
		(관리채무증감률)	-	△7.06	△7.85	△9.20	하향(↓)
		4. 관리채무상환비율	0.37	0.40	1.91	0.25	하향(↓)
		5. 통합유동부채비율	5.76	8.14	4.86	5.51	하향(↓)
공기업관리	6. 공기업부채비율	0.00	0.00	0.00	0.00	하향(↓)	
효율성	세입관리 (규모)	7-1. 지방세수입비율	3.13	3.25	3.06	3.10	상향(↑)
		(지방세수입증감률)	24.05	6.06	10.25	△0.16	상향(↑)
		7-2. 세외수입비율	2.79	2.86	2.98	2.29	상향(↑)
		(세외수입증감률)	14.99	4.71	21.98	△24.20	상향(↑)
	세입관리 (징수)	8. 지방세징수율	96.00	97.05	97.07	95.82	상향(↑)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48	1.0109	1.0002	0.9872	상향(↑)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4	0.11	0.09	0.13	하향(↓)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8.47	△19.97	△2.54	38.21	하향(↓)
	세출관리 (외부지원)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5	0.39	0.37	0.45	하향(↓)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57.39	57.17	13.43	19.64	하향(↓)
		10. 지방보조금비율	6.08	5.92	6.22	6.91	하향(↓)
		(지방보조금증감률)	△4.31	△0.42	20.07	6.36	하향(↓)
세출관리 (내부경비)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82	0.52	0.43	0.49	하향(↓)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58.52	△37.32	0.23	4.59	하향(↓)	
	12. 자체경비비율	82.51	77.19	82.38	114.94	하향(↓)	
	(자체경비증감률)	△1.75	△1.38	23.52	22.76	하향(↓)	
계획성	재정계획	13. 세수오차비율	87.89	87.02	90.83	98.02	100%지향
		(세수오차비율개선도)	-	0.990	1.044	1.079	상향(↑)
	재정집행	14. 이·불용액비율	4.65	3.25	3.34	3.66	하향(↓)

주: 1) 상향지표(↑)는 지표 값이 높을수록 양호하며, 하향지표(↓)는 지표 값이 낮을수록 양호
 2) 세수오차비율은 100%에 가까울수록 양호

1-8. 지방세 지출 현황: [별첨 2 지방세 지출 보고서]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해당없음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 민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계약 기간	총 사업비	'24년 까지 부담액	'25년 재정부담액			'26년 이후 부담예정액	비고
					소계	국비	군비		
BTL 사업	완도맞춤형 복합문화센터 (문화예술의전당)	'10.7.1. ~ '30.6.30. (총20년)	345.8	219.8	18.1	4.9	13.2	107.9	
BTO 사업	완도자원 관리센터	'11.4.27. ~ '26.4.26. (총 15년)	536	471	45	0	45	20	

※ BTL 부채는 시설임대료 중 순군비만 부채로 계상

※ BTO 부채는 업체와 지자체간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시에만 부채로 계상(완도군 자원관리센터 MRG 미체결로 부채에 미포함)

○ BTL 계약조건

(단위: 억원)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재 정부 담 액								
			'24년까지			'25년			'26년 이후		
			계	국비	군비	계	국비	군비	계	국비	군비
완 도 맞춤형 복합 문화 센터	계	345.8	219.8	60.1	159.7	18.1	4.9	13.2	107.9	29.6	78.3
	시설 임대료 (국+군)	264.6 (국 94.6) (군 170)	170.4	60.1	110.3	13.6	4.9	8.7	80.6	29.6	51
	운영비 (군비)	81.4	49.4	-	49.4	4.5	-	4.5	27.3	-	27.3

○ BTO 사용료 현황

- 총 지급 추정액 45억원(군비), 최근 3년 평균 사용료 42억원

1-9-3.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단위 : 천원)

과목 장·관·항·목	예산액 ㉖	전년도 이월액 ㉗	예산현액 ㉘=㉖+㉗	징 수 결정액 ㉙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합 계	43,393,049		43,393,049	50,538,992	46,270,562	649,837	45,620,725	420,896	4,497,371
100 지방세 수입	25,675,149		25,675,149	27,485,128	26,790,097	413,986	26,376,111	100,864	1,008,153
110 지방세	25,675,149		25,675,149	27,485,128	26,790,097	413,986	26,376,111	100,864	1,008,153
111 보통세	25,105,149		25,105,149	26,868,983	26,303,414	262,058	26,041,356	30,644	796,983
111-03 주민세	680,000		680,000	683,664	640,100	2,286	637,814	7,404	38,446
111-04 재산세	2,800,000		2,800,000	3,072,330	2,992,787	1,931	2,990,856	13,562	67,912
111-05 자동차세	5,640,000		5,640,000	5,844,984	5,440,994	53,403	5,387,591	5,738	451,655
111-07 담배소비세	4,500,000		4,500,000	4,788,226	4,584,181	117	4,584,063		204,163
111-08 지방소비세	6,985,149		6,985,149	7,059,914	7,059,914		7,059,914		
111-09 지방소득세	4,500,000		4,500,000	5,419,866	5,585,439	204,321	5,381,118	3,940	34,808
113 지난해도수입	570,000		570,000	616,145	486,683	151,928	334,755	70,219	211,170
113-01 지난해도수입	570,000		570,000	616,145	486,683	151,928	334,755	70,219	211,170
200 세외수입	17,717,900		17,717,900	23,053,864	19,480,465	235,851	19,244,614	320,032	3,489,218
210 경상적세외수입	7,781,902		7,781,902	8,810,928	8,757,347	7,167	8,750,179	226	60,523
211 재산임대수입	108,414		108,414	251,867	226,002	455	225,547	226	26,093
211-01 국유재산임대료	1,398		1,398	9,643	9,633		9,633		1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07,016		107,016	242,223	216,369	455	215,914	226	26,083
212 사료수수입	1,182,251		1,182,251	1,706,551	1,678,138	3,250	1,674,888		31,663

과목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 ㉒	예산현액 ㉓=㉑+㉒	수 결 정 액 ㉔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212-01 도로사용료				50,364	46,707		46,707		3,657
212-03 하수도사용료	563,520		563,520	572,454	572,454		572,454		
212-05 공유수면사용료	21,080		21,080	19,795	12,674		12,674		7,121
212-06 시장사용료				21,420	12,375		12,375		9,045
212-07 입장료 수입	218,790		218,790	416,123	416,014		416,014		110
212-09 기타사용료	378,861		378,861	626,394	617,913	3,250	614,663		11,731
213 수수료수입	2,242,630		2,242,630	2,689,420	2,687,686		2,686,833		2,587
213-01 증지수입	80,000		80,000	243,574	242,815	381	242,434		1,140
213-02 폐기물처리수수료	543,800		543,800	832,391	831,404		831,404		987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13-04 보건의료수수료	1,377,730		1,377,730	1,577,627	1,577,638	471	1,577,167		461
213-05 기타수수료	241,100		241,100	35,828	35,828		35,828		
214 사업수입	5,380		5,380	26,427	26,407		26,407		20
214-01 사업장생산수입				8,137	8,137		8,137		
214-04 배당금 수입									
214-05 기타사업수입	5,380		5,380	18,290	18,270		18,270		20
215 징수교부금수입	360,000		360,000	299,762	299,762		299,762		
215-01 징수교부금수입	360,000		360,000	299,762	299,762		299,762		

과목 장·관·항·목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 ㉒	예산현액 ㉓=㉑+㉒	징수 결정액 ㉔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㉕	환급액 ㉖	실제수납액 ㉗=㉕-㉖		
216 이자수입	3,883,227		3,883,227	3,836,901	3,839,352	2,610	3,836,741	16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858,090		3,858,090	3,735,368	3,735,368		3,735,368		
216-03 기타이자수입	25,137		25,137	101,533	103,984	2,610	101,373	160	
220 임시적세외수입	8,332,945		8,332,945	12,617,471	9,329,556	224,007	9,105,549	3,195,870	
221 재산매각수입	361,490		361,490	353,774	358,096	4,322	353,774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	361,490		361,490	353,774	358,096	4,322	353,774		
223 보조금반환수입	127,840		127,840	1,581,856	1,512,716		1,512,716	69,140	
223-01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67,947	67,947		67,947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27,840		127,840	1,513,909	1,444,769		1,444,769	69,140	
224 기타수입	7,082,428		7,082,428	7,442,980	7,078,809	165,873	6,912,936	530,044	
224-03 기부금수입					144,567				
224-04 지적재조사조정금	105,000		105,000	464,332	18,005		18,005	446,327	
224-05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5,633,559	5,633,559		5,633,559		
224-06 위약금				33,206	33,206		33,206		
224-07 그외수입	6,977,428		6,977,428	1,311,883	1,249,472	21,306	1,228,167	83,717	
225 지난연도수입	761,187		761,187	3,238,861	379,936	53,813	326,124	2,596,686	
225-01 지난연도수입	761,187		761,187	3,238,861	379,936	53,813	326,124	2,596,686	
230 지방행정재·부과금	1,603,053		1,603,053	1,625,465	1,393,562	4,676	1,388,885	232,825	
231 과징금	551,700		551,700	187,493	155,483		155,483	32,010	

과목	예산액 ㉔	전년도 이월액 ㉕	예산현액 ㉖=㉔+㉕	징수 결정액 ㉗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㉘	환급액 ㉙	실제수납액 ㉚=㉘-㉙		
231-01 과징금	551,700		551,700	187,493	155,483		155,483	32,010	
232 이행강제금				71,115	57,609		57,609	13,506	
232-01 이행강제금				71,115	57,609		57,609	13,506	
233 변상금	1,500		1,500	38,402	35,760		35,760	2,641	
233-01 변상금	1,500		1,500	38,402	35,760		35,760	2,641	
234 과태료	306,363		306,363	271,634	178,252	200	178,052	89,827	
234-01 차량관련과태료				214,510	129,809		129,809	82,002	
234-02 기타과태료	306,363		306,363	57,124	48,443	200	48,243	7,825	
235 환수금	2,090		2,090	188,110	99,550	162	99,388	88,722	
235-01 부정이익환수금	2,090		2,090	188,110	99,550	162	99,388	88,722	
236 부담금	741,400		741,400	868,311	866,506	4,314	862,192	6,118	
236-01 부담금	741,400		741,400	868,311	866,506	4,314	862,192	6,118	
237 범칙금				400	400		400		
237-01 범칙금				400	400		400		

[별첨 3]

2024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I.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23년(결산)	'24년(추계)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4,112,511,540	5,131,909,947	1,019,398,407
비과세	2,250,213,900	3,297,362,859	1,047,148,959
감면	1,862,297,640	1,834,547,088	-27,750,552
지방세 징수액(B)	41,242,387,000		
비과세·감면율(A/A+B)	9.1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3년(결산)	비중	'24년(추계)	비중	비교 증감	비중
총 계		4,112,511,540	100	5,131,909,947	100	1,019,398,407	100
1	일반공공행정	1,317,073,480	32.0	2,404,270,018	46.8	1,087,196,538	106.7
2	공공질서 및 안전	73,429,710	1.8	83,426,124	1.6	9,996,414	1.0
3	교육	221,087,100	5.4	140,032,824	2.7	-81,054,276	-8.0
4	문화 및 관광	148,679,650	3.6	106,819,815	2.1	-41,859,835	-4.1
5	환경보호	67,510	0	142,100	0	74,590	0
6	사회복지	475,486,430	11.6	608,103,115	11.8	132,616,685	13.0
7	보건	4,059,920	0.1	4,355,095	0.1	295,175	0
8	농림해양수산	751,767,650	18.3	643,720,033	12.5	-108,047,617	-10.6
9	산업·중소기업	40,673,850	1.0	30,323,560	0.6	-10,350,290	-1.0
10	수송 및 교통	308,827,740	7.5	282,361,359	5.5	-26,466,381	-2.6
11	국토 및 지역개발	15,869,050	0.4	31,583,455	0.6	15,714,405	1.5
12	과학기술	1,890,000	0	0	0	-1,890,000	-0.2
13	국가	638,147,850	15.5	723,445,922	14.1	85,298,072	8.4
14	외국	0	0	100	0	100	0
15	기타	115,451,600	2.8	73,326,427	1.4	-42,125,173	-4.1

3. 세목별 비과세 · 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3년(결산)		'24년(추계)		비교 증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총 계	4,112,511,540	100	5,131,909,947	100	1,019,398,407	100
보통세	3,995,212,700	97.1	5,076,334,056	98.9	1,081,121,356	106.1
취득세	2,402,792,480	58.4	2,881,228,042	56.1	478,435,562	46.9
등록면허세	41,370,580	1	38,042,734	0.7	-3,327,846	-0.3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8,184,950	0.4	16,592,600	0.3	-1,592,350	-0.2
재산세	1,315,430,930	32	1,922,926,387	37.5	607,495,457	59.6
자동차세	217,433,760	5.3	217,544,293	4.2	110,533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117,298,840	2.9	55,575,891	1.1	-61,722,949	-6.1
지역자원시설세	117,244,010	2.9	55,329,921	1.1	-61,914,089	-6.1
지방교육세	54,830	0	245,970	0	191,140	0

4. 비과세 · 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23년(결산)	'24년(추계)	증감액
합계	4,112,511,540	5,131,909,947	1,019,398,407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1,220,976,040	2,250,707,315	1,029,731,275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677,070	406,253	-270,817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7,250,360	15,301,826	8,051,466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63,737,980	109,557,500	45,819,520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21,937,510	25,802,119	3,864,609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2,494,520	2,495,005	485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피해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73,429,710	83,426,124	9,996,414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207,523,280	124,014,214	-83,509,066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759,300	0	-759,300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10,666,650	12,750,410	2,083,760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2,137,870	3,268,200	1,130,330
종교단체·향교에 대한 감면	148,501,260	106,641,167	-41,860,093
감 면 유 형	'23년(결산)	'24년(추계)	증감액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178,390	178,648	258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67,510	142,100	74,590
장애인에 대한 감면	185,634,340	159,185,048	-26,449,292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107,550,710	131,170,829	23,620,119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7,932,330	9,422,687	1,490,357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984,550	1,547,490	562,94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44,780,480	56,147,364	11,366,884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25,030,080	91,177,551	66,147,47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820,310	2,906,691	2,086,381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94,195,200	124,570,507	30,375,307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8,558,430	31,974,948	23,416,518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4,059,920	4,355,095	295,175
농업인에 대한 감면	80,142,210	143,858,993	63,716,783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20,164,770	41,800,407	21,635,637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7,212,770	19,482,207	12,269,437
임업인에 대한 감면	979,220	0	-979,22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25,069,120	23,937,610	-1,131,510
어업인에 대한 감면	193,816,470	135,705,347	-58,111,123
어법법인에 대한 감면	186,267,010	117,366,052	-68,900,958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31,907,850	24,990,001	-6,917,849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46,024,520	110,782,249	-35,242,271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60,183,710	25,797,167	-34,386,543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1,587,210	989,177	-598,033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86,640	0	-86,640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39,000,000	25,247,533	-13,752,467
지방이전 지원 등에 대한 감면	0	150,000	150,000
매대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0	3,936,850	3,936,850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681,850	0	-1,681,850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69,902,950	62,630,987	-7,271,963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감면	220,216,070	210,782,027	-9,434,043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233,000	230,700	-2,300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0	285	285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6,793,870	8,717,360	-8,076,510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0	393,687	393,687
감 면 유 형	'23년(결산)	'24년(추계)	증감액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11,229,430	26,498,510	15,269,08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4,639,620	4,691,258	51,638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1,890,000	0	-1,890,000
국가에 대한 비과세	633,578,370	719,610,332	86,031,962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944,140	119,040	-825,10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3,625,340	3,716,550	91,210

비과세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0	100	100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52,000,000	0	-52,000,000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19,115,040	17,335,174	-1,779,866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감면	1,073,120	13,593,893	12,520,773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23,749,420	26,715,381	2,965,961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9,847,710	5,826,146	-4,021,564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245,980	264,030	18,05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2,113,970	2,229,015	115,045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99,030	486,768	387,738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7,207,330	6,876,020	-331,310

II. 지방세 비과세 ·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일반공공행정		합 계	1,317,073,480	2,404,270,018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 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1,220,976,040	2,250,707,315
		취득세	889,497,780	1,514,783,893
		주민세	2,700,000	2,700,000
		재산세	266,255,450	709,800,460
		자동차세	3,788,690	3,936,889
		등록면허세	4,684,830	7,550,571
		지역자원시설세	54,049,290	11,935,502
2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3의2①)	소계	677,070	406,253
		취득세	677,070	406,253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계	7,250,360	15,301,826
		재산세	7,206,900	15,291,839
		지역자원시설세	43,460	9,987
		-		
4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① 2호)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5	정당에 대한 감면 - 정당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9①·②·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6	정당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감면 - 정당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89④)(폐지)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7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감면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면제(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 계	63,737,980	109,557,500
		취득세	6,581,290	5,061,320
		재산세	50,602,470	98,579,435
		등록면허세	67,500	9,000
		지역자원시설세	6,486,720	5,907,745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8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21,937,510	25,802,119
		재산세	21,937,510	25,802,119
		-		
		-		
9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소 계	2,494,520	2,495,005
		재산세	2,494,520	2,495,005
		-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73,429,710	83,426,124
1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①)	소 계		
		취득세		
		재산세		
		-		
11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 민영교도소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②)(폐지)	소 계		
		취득세		
		재산세		
		-		
12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피해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감면·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유족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소계	73,429,710	83,426,124
		취득세	0	8,582,520
		재산세	2,469,780	0
		자동차세	70,959,930	74,842,794
		지방교육세	0	81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p>(지방세특례제한법 §92④·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 (경북)소상공인이 취득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양산)상업용·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양산)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 (남원)서남대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그 주변생활권 내 토지 및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조례)감염병 피해 및 복구지원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감면 - (조례)천재지변 등에 따라 발생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 (조례)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부동산의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감면 - (취득세 100%)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에 대한 상속 취득 			
13	<p>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비과세·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②) - (경기 파주) 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소 계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교 육		합계	221,087,100	140,032,824
14	<p>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계	207,523,280	124,014,214
		취득세	79,270,420	1,792,000
		주민세	2,150,000	2,150,000
		재산세	102,908,550	111,263,527
		등록면허세	36,000	54,000
		지역자원시설세	23,158,310	8,754,687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15	교육자치단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취 득 세		
		-		
16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계	759,300	0
		지역자원시설세	759,300	0
17	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① 2호)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18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폐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 병원에 대한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지방대학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1⑧)	소계	10,666,650	12,750,410
		재산세	8,338,540	10,557,903
		등록면허세	45,000	45,000
		지역자원시설세	2,283,110	2,147,507
19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감면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 제공 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1④)(폐지)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20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3③, §44①) -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②) -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특례제한법 §44③) -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4④)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21	평생교육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3④)(폐지)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22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면제,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8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소계	2,137,870	3,268,200
		재산세	2,137,870	3,268,200
		-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문화 및 관광		합계	148,679,650	106,819,815
23	종교단체·향교에 대한 감면 - 종교행위 또는 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민법 상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5%(감염병전문병원 25%), 재산세 25%(감염병전문병원 35%),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계	148,501,260	106,641,167
		취득세	55,810,910	7,018,707
		주민세	3,750,000	3,650,000
		재산세	76,457,380	83,537,112
		등록면허세	18,000	18,000
		지역자원시설세	12,464,970	12,417,348
		-		
24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감면 - 종교행위·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④)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25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1)	소 계		
		주민세		
		-		
26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감면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 (서울 종로구) 인사동·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등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 (제주) 공연장 설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 문화예술 공공기관, 체육진흥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2의2)	소 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27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조례로 추가 25%까지 감면可) (지방세특례제한법 §54①) - 평창군에 위치한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선수촌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중과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4⑥)(폐지)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28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 (제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시행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장외발매소분에 대한 레저세 감면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레 저 세		
		-		
29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보호구역 내 부동산 및 국가등록문화재와 부속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조례)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 - (서울 종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 (서울 성북) 등록 한옥 주택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감면 - (조례)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 (조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소계	178,390	178,648
		재산세	178,390	178,648
		-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환경보호		합계	67,510	142,100
30	환경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			
3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8) -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3) - (서울 서초)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 (조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소계	67,510	142,100
		재산세	67,510	142,100
		-		
32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개선 등의 사업용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취득하는 선박의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9)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33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3~10%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①) -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15~20%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②) -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취득세 10%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③) -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50% 재산세 50%(5년간) 감면, 대수선의 경우 취득·재산세(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①)(폐지) -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1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③)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25%(설치의무가 없는자에 한함)(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5) - (제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 20%, 2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 15%, 3등급 이상인 경우 1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④)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사회복지		합계	475,486,430	608,103,115
3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폐지) - (인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 - (제주)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	소 계		
		주 민 세		
35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조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소계	185,634,340	159,185,048
		취 득 세	109,812,440	85,560,174
		자 동 차 세	75,821,900	73,581,444
		지 방 교 육 세	0	43,430
3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8)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37	한센인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①) -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②)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 역 자 원 시 설 세		
38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①1호)(폐지) -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①2호)(폐지) - 「공무원연금법」 제17조제4호 및 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②1호)(폐지) - 「공무원연금법」 제17조제3호 및 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②2호)(폐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③1호)(폐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3호 사업을 취득·재산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③2호)(폐지)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39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무료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감면, 유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25% 감면 (조례추가50%, §22①, §22②, §22③, §22④) -(부산 금정구·광주 남구) 사회복지시설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75%(법령 25%+조례 50%), 재산세 100%(법령 50%+조례 50%) - 사회복지법인등이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포함)에 대한 주민세 면제, §22⑤, §22⑥, §22⑦)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⑧)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제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소득세 50% 천안)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 (경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100%	소계	8,558,430	31,974,948
		취득세	0	23,588,547
		주민세	2,479,250	2,529,250
		재산세	4,533,430	5,462,363
		지역자원시설세	1,545,750	394,788
40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사회복지법인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폐지)(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4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140만원 한도)(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 (제주) 다자녀가정 출산 및 양육 목적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제주)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소계	107,550,710	131,170,829
		취득세	102,941,130	127,345,081
		재산세	4,609,580	3,825,748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감면 - 출산가구 주택취득의 경우 취득세 100% 감면(500만원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5) - (경북) 다자녀가구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100% - (강원) 18세 미만 3명이상 자녀 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50%			
4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무료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 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소계	7,932,330	9,422,687
		취득세	3,045,710	3,661,253
		재산세	3,992,070	5,080,459
		지역자원시설세	894,550	680,975
43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 맹,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 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 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1①)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1②)	소계	984,550	1,547,490
		재산세	984,550	1,547,490
		-		
44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감 면(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1호)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부동산에 대하여 취 득·재산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3호) - 법률구조법인·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3①,②)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45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7①2) -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 여 취득·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감면(지방세특 례제한법 §27②2)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		
46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 한법 §26)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47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 근로자 복지를 위한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5)(폐지)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4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승용자동차 취득·자동차세 50%(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소계	44,780,480	56,147,364
		취득세	14,027,910	27,834,400
		재산세	409,320	369,780
		자동차세	30,297,000	27,889,284
		등록면허세	27,000	27,000
		지방교육세	0	11,110
		지역자원시설세	19,250	15,790
-				
4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0①) - 보훈병원 의료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0②) - 독립기념관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③)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50	주거안정지원 등에 대한 감면 - 서민주택(40㎡이하·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②)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50%(60㎡이하), 재산세 25%(60㎡초과),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100%(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4)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5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설임대주택 60㎡이하 취득세 면제, 60~85㎡(20호이상) 50% 감면, 매입임대주택 60㎡이하 취득세 면제, 20호이상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②)	소계	25,030,080	91,177,551
		취득세	0	43,520,00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적별 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25%,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면적별 50~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폐지)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1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5)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4) 	재산세	25,030,080	47,657,551
		소계	820,310	2,906,69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5% 감면(225만원限)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폐지)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공시가격 6억원限)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재산세	476,810	220,691
		등록면허세	343,500	2,686,000
		-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6) - (제주) 어려운가구 집지어주기 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소계	94,195,200	124,570,507
		취득세	94,195,200	124,570,507
52				
53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써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2)(폐지)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100%(200만원 限)(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보건		합계	4,059,920	4,355,095
54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7)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지원시설세		
55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료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75%(감염병전문병원 8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의2) - (경기 포천)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	소계	4,059,920	4,355,095
		재산세	4,059,920	4,355,095
56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보험료, 보험급여 관리를 위한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①1), - 자산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을 위한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①1)(폐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②1),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②2)(폐지)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59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①) -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 경감(1000분의 8)(지방세특례제한법 §8④)(폐지)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60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무상양여 받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3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계	20,164,770	41,800,407
		취득세	16,788,900	40,058,093
		재산세	3,375,870	1,742,314
61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④)(폐지)	소계	7,212,770	19,482,207
		취득세	2,434,850	10,693,800
		재산세	4,777,920	8,788,407
62	임업인에 대한 감면 - 임업인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취득세 면제, 99만㎡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③) - 임업에 대한 주민세(종업원·사업소)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소계	979,220	0
		취득세	979,22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63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계	25,069,120	23,937,610
		재산세	25,069,120	23,937,610
		-		
64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 여수세계박람회재단 등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4⑤)(폐지) - (조례) 해양박람회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 사업시행자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 시설세		
		-		
65	어업인에 대한 감면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9①)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 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에 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③) -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종업원·사업소)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106의 2① 1호)	소계	193,816,470	135,705,347
		취득세	191,342,520	135,000,200
		주민세	2,467,750	695,500
		재산세	5,650	9,083
		지역자원 시설세	550	564
66	어법법인에 대한 감면 - 어법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어법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2②)(폐지)	소계	186,267,010	117,366,052
		취득세	159,447,230	74,550,720
		재산세	26,819,780	42,815,332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67	영농자금 등의 용자지원을 위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등에 용자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0①)	소계	31,907,850	24,990,001
		등록면허세	31,907,850	24,990,001
		-		
68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업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14④) -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의3)	소계	146,024,520	110,782,249
		취득세	74,883,710	24,617,014
		재산세	71,140,810	86,165,235
		-		
		-		
6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등에 대한 감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5①) - 농수산물공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및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100% 감면(조례로 조정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15②)(폐지)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70	농수산물가공업에 대한 감면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농산물 산지가공업자, 수산물 가공업자가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례)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직접사용 부동산 등 취득·재산세 감면(조례)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71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280만원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계	60,183,710	25,797,167
		취득세	59,204,960	25,796,173
		재산세	978,750	994
		-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산업·중소기업		합계	40,673,850	30,323,560
72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6③)	소계	1,587,210	989,177
		재산세	1,587,210	989,177
		-		
		-		
73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 - '26.12.31.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4년이내(청년창업 벤처기업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75%,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③)(폐지)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19②, §120③, §121)(폐지) - (제주·구미) 벤처기업의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내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 50%(법령 35%+조례 15%)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		
		-		
74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취득한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①)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전통시장 협동조합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0①)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2% 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0②)(폐지) -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④) 	-		
75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②)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기 위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③)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76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		
77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감면(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②) -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6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6③)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재산세 6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6④)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호) - (광주, 광주북구)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 (김해) 기술혁신 선도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30% 감면(도시지역분 포함)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담배소비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78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8②)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8③) - (제주)(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에서 2020년7월13일 이후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간 지방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50% 제주) 일자리창출_법인 소유 업무용 자동차(감면을 신청한 해당연도) -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액) 100% 제주) 일자리창출_도내 사업장에서 2018년7월13일 이후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감면을 신청한 해당연도) - (주민세 사업소분 100%) 산업단지 내 청년 채용에 대한 감면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주 민 세		
		-		
79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 외 지역 재산세 60%)(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취득·재산세 50%(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하고 3년간 재산세 50% 감면(수도권 외 지역 60%)(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재산세 35%(+ 조례 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 지식산업센터를 직접사용,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재산세 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①) -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감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②) - 위기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재산세(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5의3) - (인천·광주·강원·전남) 테크노파크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서울·경기)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제주) 토평공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5년 안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 (강원·경북 문경)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 100%,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대구·경북) 우수향토기업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재산세 50% 감면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경기평택·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 고용창출기업(고용우수)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50% 감면			
8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 50~100%, 재산세 50~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의3)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81	담배 수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수출용(수출 상담 건본용 포함), 보세구역판매용 담배 등에 대해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1·3호)	소 계		
		담배소비세		
82	지방이전 지원 등에 대한 감면 - 본점 및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9) - 공장을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그다음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0) -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5의5) - 해외진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	소계	0	150,000
		등록면허세	0	150,00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p>용 부동산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9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경북) 해외진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100%(법령 50%+조례50%) -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0의2①) - (경기)창업·취득 부동산 취득세 75%(법령 50%+조례 25%) - (경북·제주)창업·취득 부동산 취득세 100%(법령 50%+조례 50%) -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0의2②) - (경북·제주) 본점 등 폐업 후 이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100%(법령 50%+조례 50%) -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75%(수도권 지역 35%)(지방세특례제한법 §80의2③) - (경기·경북·제주)공장 신·증설 기업, 직접사용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법령 50%+조례 25%) 			
83	<p>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3①) -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주택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3②)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례) - (서울 자치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84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 판매업 중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 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62의2)(폐지) -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1)(폐지) -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충북) 도시가스사업자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감면	소 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85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광업권의 설정·변경 등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①) -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②)(폐지)	소 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86	매대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대용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대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감면,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③)	소계	0	3,936,850
		취득세	0	3,680,000
		자동차세	0	256,850
		-		
		-		
87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 면제,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②) - 금융기관의 기업합병·분할 등으로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세 50% 감면,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①, §57의2⑤ 1·2·4·5·6·7·8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	소계	86,640	0
		취득세	86,640	0
		-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p>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①1·2·3·4호] 				
88	<p>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75%~10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③ 2,3,5호, §57의2⑤ 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3호)(폐지)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②,③,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④) 	소계	39,000,000	25,247,533	
		취득세	39,000,000	25,247,533	
89	<p>명목회사에 대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중과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180의2①) - 투자목적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등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중과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180의2②) - (부산·제주) 선박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0% 감면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수송 및 교통		합계	308,827,740	282,361,359
9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국가철도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 25% 감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100%감면(조례로 조정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 철도사업면허를 받은자가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⑥)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91	무료도선용 선박 등에 대한 비과세 - 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전마용 선박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4호, §145②)	소 계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92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제선박 취득세 2% 세율 경감,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①) - 화물운송용·외항여객운송용·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취득세 1% 세율 경감 및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②)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취득세 2% 세율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64③)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2호) - (부산·경남, 부산 00구)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 (인천, 인천 00구)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울산, 울산 00구) 울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소계	1,681,850	0
		재산세	1,633,850	0
		등록면허세	48,00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광양)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안에 입주자의 항만관련시설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 			
93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취득세 12% 세율 경감, 5년간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5)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세율인하 및 1.25/1000 감면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94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형 승용(75만원 限)·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7) 	소계	69,902,950	62,630,987
		취득세	69,902,950	62,630,987
		-		
95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40만원 이하) 및 공제(40만원초과 시 40만원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③) -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및 공제(140만원초과 140만원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④) - 수소전기화물차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6⑤) - (제주)전기자동차로서 초소형 승용자동차(비영업용)자동차세 감면 	소계	220,216,070	210,782,027
		취득세	220,216,070	210,782,027
		-		
96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유를 원료로 하는 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해 노후자동차를 폐차·말소하고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100만원 한도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6조의2)(폐지) 	소 계		
		취 득 세		
		-		
97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차 정원 7~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2007.12.31.이전에 신규등록 및 신규로 신고된 차량 限)(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소계	233,000	230,700
		자동차세	233,000	230,70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98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9)	소계	0	285
		재산세	0	285
		-		
99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0①)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버스,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75~100%)(지방세특례제한법 §70③·④)	소계	16,793,870	8,717,360
		취득세	16,793,870	8,717,360
		-		
10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25%(+조세 1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 - (광주 남구) 물류단지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 35%(법령 25%+조세 10%) -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5년간) 3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②)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③) - (대구, 대구 00구)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내 입주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충북,충남,경북) 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지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 첨단물류단지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15%(지방세특례제한법 §71의2①) -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40%(§71조의2①에 따른 사업시행자 취득세 15%)(지방세특례제한법 §71의2②)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국토 및 지역개발		합계	15,869,050	31,583,455
101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3①)	소 계		
		취 득 세		
		-		
10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폐지)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4③) - (제주) 제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취득자 등에 대한 감면(조례)	소 계		
		취 득 세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폐지)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75% 감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75% 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85㎡이하 주택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④) -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50% 감면, 60제곱미터 75% 감면, 85 제곱미터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4⑤)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종전 부동산 가액합계 내에서는 취득세 면제하고 가액초과분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에 한하여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4의2①, §74의2③3) - 복합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현물약정 체결한 경우 취득세 면제, 미체결	소 계		
		취 득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p>시 취득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4의2③1)</p> <p>-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4의2③2)</p>			
104	<p>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p> <p>-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②)</p> <p>-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남동구·서구, 경기 평택시·여주군·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p>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05	<p>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p> <p>-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단지조성용,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7②)</p>	소계	0	393,687
		재산세	0	393,687
		-		
106	<p>산업단지에 대한 감면</p> <p>-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p> <p>-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p> <p>-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p> <p>-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75%), 대수선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p>	소계	11,229,430	26,498,510
		취득세	2,574,390	14,505,960
		재산세	8,655,040	11,992,55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임대 및 매각 사업, 후생복지·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0% 감면(수도권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⑥)(폐지)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78⑨)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광주 광산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대전 유성·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강원,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광역공동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법50%+ 조례25%) - (전주) 연구개발특구지역 사업시행자 분양, 임대 목적 부동산 - (세종) 세종스마트국가산단·세종복합일반산단 사업시행자관련 부동산 재산세 공제 			
10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1①②)(재신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108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기업도시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17, 조례)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여 하는 사업,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하는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조례로 조정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75의2)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109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5)(폐지) - (서울)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 (부산) 한국거래소의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 (부산)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 (제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4% 적용, 재산세는 일반 주택 세율 적용 - (제주)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4% 적용, 재산세 3년간 25% 감면 - (제주) 골프장용 토지·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4% 적용, 골프장용 건축물·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저율과세 - (제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 (제주) 건축공사 착공 후 부도·자금사정 등에 따라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를 매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 (제주) 제주투자진흥지구 최초 입주기업 직접사용 부동산, 선박 재산세 취득세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포함)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110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2)	소 계		
		재산세		
		-		
1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계	4,639,620	4,691,258
		재산세	4,639,620	4,691,258
		-		
		-		
112	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대도시 안에 설립하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삭제)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113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 재개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35%,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의2)(폐지)	소 계		
		취 득 세		
		-		
11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폐지)	소 계		
		취 득 세		
		-		
115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3년간 재산세 세율 0.15% 적용(조례) - 하수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수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조례) -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시 취득세 75% 감면(조례)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2. 과학기술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과학기술		합계	1,890,000	0
116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소계	1,890,000	0
	- 박물관 또는 미술관,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4의2)	등록면허세	1,890,000	0
	-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2)			
	-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지방세특례제한법 §45의2)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국 가		합계	638,147,850	723,445,922
117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계	633,578,370	719,610,332
		취득세	42,156,040	95,815,347
		주민세	1,400,000	1,350,000
		재산세	567,137,590	600,124,088
		자동차세	10,705,090	11,668,164
		등록면허세	1,453,000	1,554,162
		지역자원시설세	10,726,650	9,098,571
118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계	944,140	119,040
		취득세	944,140	119,040
		-		
119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계	3,625,340	3,716,550
		재산세	361,010	515,999
		지역자원시설세	3,264,330	3,200,551
		-		
120	국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 (지방세법 §145①2)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121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③)	소 계		
		취 득 세		
		-		
122	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에 납품하는 담배 및 국가원수의 행사용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54① 2호, §54① 7호)(삭제)	소 계		
		담배소비세		
		-		

14.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외 국		합계	0	100
123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2호, §90, §109①, §145②)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3호)	소계	0	100
		재산세	0	100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124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자동차·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90, §126 3호)	소 계		
		주 민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125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소 계		
		주 민 세		
		-		
126	주한외국군의 관할구역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 주한외국군의 군인, 주한외국군의 종사자 및 가족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 ① 2호)	소 계		
		담배소비세		
		-		
127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62.5~10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1의2)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기 타		합계	115,451,600	73,326,427
128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145②)	소계	9,847,710	5,826,146
		재산세	8,308,610	5,063,240
		지역자원시설세	1,539,100	762,906
		-		
		-		
129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③ 1,2,3호) -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⑥)	소계	52,000,000	0
		취득세	52,000,000	0
		-		
130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감면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④, §15① 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73③)	소 계		
		취 득 세		
		-		
13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2호)	소계	19,115,040	17,335,174
		취득세	19,115,040	17,335,174
		-		
13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감면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3·4호)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1호)	소계	1,073,120	13,593,893
		취득세	1,073,120	13,593,893
		등록면허세		
		-		
13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이전한 건축물의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5호)	소 계		
		취 득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134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분할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계	23,749,420	26,715,381
		취득세	0	2,658,853
		자동차세	23,533,420	23,758,768
		등록면허세	216,000	294,500
		지방교육세	0	3,260
135	해외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 등록면허세 면제(폐지)(지방세특례제한법 §91) -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 판매하는 담배,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4·5·7·8호, §54②)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		
136	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추계)
137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	소 계	245,980	264,030
		재산세	245,980	264,030
		-		
138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2,113,970	2,229,015
		재산세	2,113,970	2,229,015
		-		
139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소 계	99,030	486,768
		재산세	99,030	486,768
		-		
140	저축지원을 위한 감면 -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89①) -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89의3①)	소 계		
		지방소득세		
		-		
141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서울 00구)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를 위하여 경호안정상 별도주거지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 (서울 00구)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1,000분의 1.5 적용	소 계		
		재산세		
		-		
14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7,207,330	6,876,020
		주민세	1,096,200	1,376,100
		재산세	3,319,000	3,265,660
		자동차세	2,094,730	1,379,400
		등록면허세	633,900	664,500
		지방교육세	54,830	187,360
		지역자원시설세	8,670	3,000